

— 구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'96년도 정기저물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현실에 맞게 개선 정비하여 물품관리에 적점을 기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- 구미시물품관리조례 제25조중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물품으로 개정
- 소모품 범위기준 조정
 -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의 물품으로서를 취득단가 10만원이하의 물품으로서로 개정

4. 검토의견

- 구미시물품관리조례 제25조 내용 중 제12조의 2 규정을 제12조로 개정하는 것은 제12조 2의 규정이 없음으로 정정하는 것이며,
- 소모품의 내용년수가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이하의 물품으로써 사용에 비려 파손되기 쉬운 물품의 경우, 가액기준이 현실가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어 현실화하기 위한 것임.